

의안번호	2219675
의 퇴 인	김용태의원
회 답 일	2026. 8. 20.
추 계 번호	26C3268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7조의2제2항 (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의 설치 등)	1.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<u>지원(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)</u> (제2항)	의무규정
2	안 부칙 제2조 신설 (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에 관한 적용례)	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(제1항 신 설)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소송이 개시되 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(제2항 신설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의2제2항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부칙 제2조 신설(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에 관한 적용례)	

2. 상세 사유

-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(안 제 47조의2제2항제1호)
 -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

및 지원을 할 때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도 지원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

- 다만,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재량규정으로 정하므로 일부 지역에만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사항은 ‘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’ 사업¹⁾에 포함되어 있고, 시도별 노무·법률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무·법률지원 예산 현황: 2026년

(단위: 천원)

시·도	예산 현황
서울	노무사 선임 60만원, 변호사 150만원 등 총 960만원
인천	(정기상담) 30,000원 × 3시간 × 4회 × 10월 = 360만원 (긴급상담) 15,000원 × 20회 = 30만원 (찾아가는 상담) 30,000원 × 4시간 × 2회 = 24만원
광주	(노무상담) 월165,000원 × 12월 = 198만원
대전	(온라인 노무상담) 월150,000원 × 12월 = 180만원
울산	해당사항 없음
경기	월300,000원 × 12월 = 360만원
강원	해당사항 없음
충북	(온라인 상담) 150,000원 × 12월 × 3명 = 540만원
전북	(대면상담) 150,000원 × 10회 = 150만원 (온라인·유선 상담) 50,000원 × 15회 = 75만원
전남	(노무상담) 100,000원 × 10회 = 100만원
제주	전용 상담 전화 운영(1차 기본상담, 2차 전문가 연계(변호사·노무사 등))

주 1.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하였으나, '26.7. 기준 광주·전남 별도 운영

2. 울산, 강원 등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노무·법률상담 미포함

자료: 보건복지부

- 개정안 시행 시에 관련 사업이 더 넓은 범위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그 규모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

1) 2026년 697백만원이 편성되어있고, 지원 시·도는 서울, 인천, 전남·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북, 전북, 제주임

-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에 관한 적용례(안 부칙 제2조 신설)
- 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개정안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므로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개정안 시행 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현시점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nabo.go.kr